

● 제30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1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2380

### I. 조례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1. 5. 25.
- 다. 회부일 : 2021. 5. 3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및 심의업무가 인권담당관에서 여성가족정책실(여성권익담당관)로 이관됨에 따라, 사건 심의기능을 수행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9까지 신설)

- 비밀유지 의무를 심의위원회 의원 등 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까지 확대(안 제21조의10 제4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입법예고('20. 9. 29.~10. 5.'21. 4. 29. ~ 5. 20.) 결과: 의견없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시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

### 2 주요사항 검토

#### □ 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정의 (안제1조의2)

-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정의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과 “2차 피해”의 개념을 상위법을 인용하여 신설하였음.

용어	상위법 및 인용 조항
성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sup>1)</sup>
2차 피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 <sup>2)</sup>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 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2)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 이는 조례의 해석 및 적용 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법적 분쟁 등을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조례의 집행과 서울시 조직내 구성원의(현행 조례는 적용대상은 서울시민으로 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은 서울시 조직내 공무원 등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함)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상위법 사항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입법경제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제21조의2)

- 개정안은 서울시와 소속기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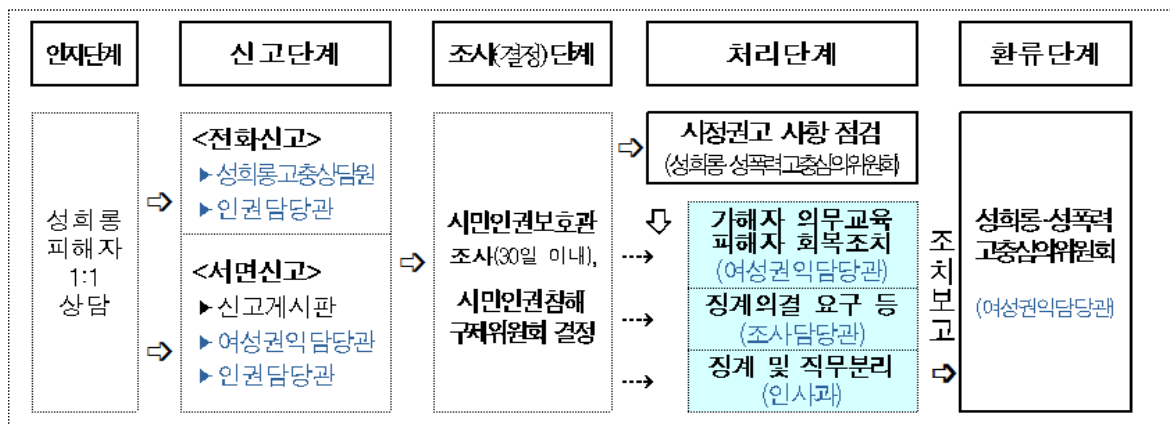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직,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 간에 발생하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6조의2<sup>3)</sup>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기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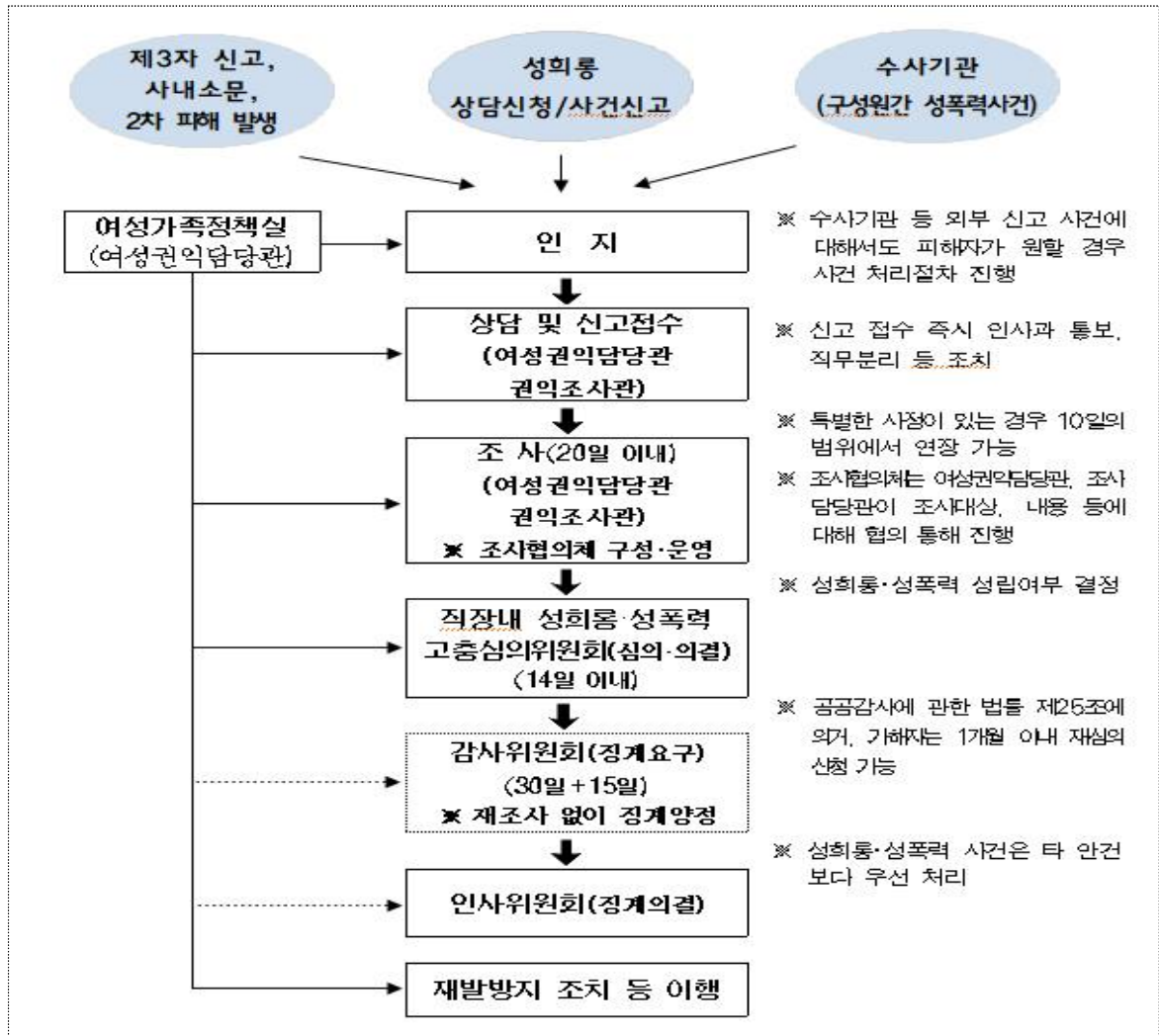


- 이전에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가 시민인권침해 권리 구제 절차에 포함되어 운영됨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성희롱·성폭력 여부 결정 후, 조사담

3)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당관 재조사하는 방식<sup>4)</sup>으로 4개의 부서가 분절적·중복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평균 8~12개월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정보유출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의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음.

### <개정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4) 여성권익담당관은 가해자 의무교육 및 피해자 회복조치 등 지원업무를 수행함.



○ 이에 신고접수부터 조사, 심의, 피해자 보호까지 사건 처리단계를 일원화하고 여성권익담당관에서 전담처리하여 조사기간의 단축 및 기밀유지,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하고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위원회 설치·운영 외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에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제로 운영되었던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서울시 행정규칙인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시행 2021. 4. 6.] [서울특별시규칙 제 4418호, 2021. 4. 6., 제정]으로 상향입법하여 규정하였음.

○ 개정안(제21조의2)은 서울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피해 포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2(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 등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한다.

- 위원회는 규칙 제정 전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하 ‘예방지침’ 제12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상향입법하여 조례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담 심의기구로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위원회의 심의 사항>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제2항)	개정안 (제21조의2제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사항 적정이행 여부</u></li> <li>2. <u>2차 피해 예방조치 적정 여부</u></li> <li>3. <u>피해자 보호 및 사건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결정</u></li> <li>4. <u>그 밖에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u></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u></li> <li>2. <u>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u></li> <li>3. <u>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u></li> <li>4. <u>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u></li> </ol>

- 또한, 시장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의 판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할 우려가 있는 바, 안 제21조의 10제6항에서 시장이 행위자인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조사와 심의를 이관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개정안(안 제21조의3)은 위원회를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3조제2항에서 인원을 6명으로 명시하고 있고, 기존 예방지침에 따른 위원회와는 달리 사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

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규모를 축소하고, 표결 결과 가부동수(可否同數)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위원회 인원을 홀수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지침이나 기존 위원회와 달리, 전원 외부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독립적으로 심의(안 제21조의2제3항)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현 서울시장의 공약 및 지난 4월 20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은 결국 시장에 의하여 위촉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점이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본문<sup>5)</sup>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4조제1항<sup>6)</sup>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

---

5)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6)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4조(시장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비교>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3조)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3조)	개정안 (안 제21조의3)
<p><u>제13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u></p> <p><u>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③ 위원장은 ○○○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u></p> <p><u>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u></p>	<p><u>제13조(위원회 구성)</u></p> <p><u>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행정1부시장과 외부 전문가 중 1인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외부 전문가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u></p> <p><u>④ 내부위원은 여성 가족정책실장, 행정</u></p>	<p><u>제21조의3(심의위원회 구성)</u>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u>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u></p> <p><u>③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u></p>

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p>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3조)</p>	<p>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3조)</p>	<p>개 정 안 (안 제21조의3)</p>
<p><u>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u></p>	<p><u>국장, 감사위원장과 3인 이하의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u></p> <p>⑤ <u>외부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③ <u>위원의 구성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u></p>	<p><u>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④ <u>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⑤ <u>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u></p>	<p>⑥ <u>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u></p>	<p>⑤ <u>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u></p>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3조)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3조)	개정안 (안 제21조의3)
<u>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u>	<u>여성권익담당관이 되며, 필요 시 구제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자가 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다.</u>	<u>간사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u>

- 이밖에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조례)」 제7조7)에 따라 위원의 임기(안 제21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안 제21조의5), 위원의 해촉 규정(안 제21조의6), 위원장의 직무내용(안 제21조의7), 위원회 회의 운영 사항(안 제21조의8), 5년의 위원회 존속기한(부칙) 등을 명시하고 있음.

7)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또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이 당사자인 피해자(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와 행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5조를 반영한 것으로,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조치 이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1조의9(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한편 위원회 관련 규정은 시장의 조직편성권과 인사권에 해당하는 위원회 설치·구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 의견을 제출한 바, 위원회 설치·구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피해자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확대(안제21조의10)**

- 개정안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준수의 의



무를 위원회 위원 등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등 당사자를 보호하고자 하였음.

현행	개정안
<p>제22조의2(피해자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① ~ ③ (생략)</p> <p>④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u>조사과정</u>에 참여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u>처리</u>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u>조사과정</u>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생략)</p> <p>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u>조사</u>를 이관하여야 한다.</p>	<p>제21조의10(피해자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조사나</u> <u>제21조의2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u>----- --- <u>처리, 심의</u>--- <u>조사나 심의</u> <u>과정</u>----- -----.</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u>조사와 심의</u>----- ---</p>

- 또한 조례의 구성과 체계에 맞도록 조번호를 변경하였음.

#### □ 그 외 사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 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의 긍정성이 크고, 이에 따른 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항별 신·구 대비표>

조항 구분	현행	개정안
제33조제2항 중	~한 <u>자에게는</u>	~한 <u>사람에게는</u>
제41조제3항제3호 중	~한 <u>자</u>	~한 <u>사람</u>
제50조제3항제2호 중	~한 <u>자</u>	~한 <u>사람</u>

### 3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 등으로 확대·일원화하여 설치·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서울시 조직원의 중요성 인식 및 구속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그러나 동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장이 지난 6월 8일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바,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법」제116조의2<sup>8)</sup>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 위원회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위원회라 할 것임.

문 의 처

이정화 입법조사관 (02-2180-8146)

---

8)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